■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8.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영업주 성명(변경 전/변경 후)	전화번호
	영업장 상호(변경 전/변경 후)	영업장 소재지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재발급 신청사유	[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 상호가 바뀐 경우 [ ] 영업주가 바뀐 경우 [ ]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사용재료: 설치면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영업주 또는 상호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완비증명서 발급번호·발급일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기존 고시원업·산후조리업은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이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 신규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1.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완비증명서 발급대장)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2.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	접수 및 안전시설등 설치·관리 현장확인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